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13.

발의자 : 정인화 · 천정배 · 박주현
김종회 · 장병완 · 유동수
황주홍 · 윤영일 · 홍문표
민홍철 · 이찬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원천소재인 생명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,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명자원의 세계적인 주권화 추세 등으로 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특히,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은 식량안보, 가축 전염병, 고령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,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생명자원의 수집·보존 및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,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, 관련 정보의 수집 ·

활용 체계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및 제21조의2).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) ① 정부는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수집, 보존, 특성 분석·평가, 증식,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2.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·연구기관·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
3.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
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·연구
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
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갱신하는 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수집, 보존, 특성 분석·평가, 증식,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

2.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·연구기관·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

3.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·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